

창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63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신원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1. 20.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19가소712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19,8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퇴직적립금 명목의 금원 수령사실 및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등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 2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일반관리비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점, 원고가 제출한 관리비부과내역에서 알 수 있는 일반관리비 항목 중 관리용역비, 경비비 항목 중 경비용역비, 청소비 항목 중 청소용역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금액 추이(갑 제5 내지 13호증), 1인당 직종별 월간 용역 인건비 산출내역서(갑 제2, 16호증)에도 퇴직금 항목이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용역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위임”을 “재위임”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피고는”을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제6조”를 “제3조”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주택법령과”를 삭제하고,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6행의 “원고가 지급청구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다음날인”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득관, 판사 서민아, 판사 석동우